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6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한병도・이기헌・임오경

이해식 · 정태호 · 박 정

박수현 • 진선미 • 장철민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 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률 제 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시행일 현재"를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로,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이 법 시행일 이후"를 "2021년 4월 13일 이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급 한다"를 "지급하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

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021년 4월부터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2021년 4월 13 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퇴직연금일시금등의 감액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했 개 정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 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 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 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 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 서 같다) 제64조제1항제1호 또 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는 제2호-----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 2021년 4월 13일 이후-----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 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 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 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 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 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u>지급하되,</u>제6조부 <신 설>

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 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 을 송달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 1항제1호(같은 항 제1호와 제2 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도 포함한다)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 는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개정 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 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 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 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0 21년 4월부터 최초로 퇴직급여 의 전액을 지급하는 달의 전달 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 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	③ 제1항 및 제2항
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